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호

제출년월일 : 2022. 4.

발 의 자 : 전자영 의원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위치(안 제2조)

○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운영시간,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0조)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1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스튜디오의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296-1, 297-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명 스튜디오
2. 자연광 스튜디오
3. 사무실 및 회의실
4. 편집실
5. 분장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
3. 지역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4. 시민들을 위한 영상교육·전시실 운영
5.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축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스튜디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등) ①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 등(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③ 시장은 스튜디오의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시민 등의 스튜디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주된 사용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스튜디오 시설 및 관련 장비의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스튜디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스튜디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스튜디오의 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스튜디오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튜디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영상미디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

[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사용목적			
사용계획	1. 사용시설 : 2. 사용인원 :		
담 당 자	(인)		

□ 스튜디오 사용 주의사항
- 사용 중 시설이나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용이 끝나면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제공목적 :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시설, 장비 사용에 따른 본인 확인
2. 제공받는 자 : 용인시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4.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스튜디오 사용 목적 달성 시까지

※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허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성명		미성년자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 주소			

미성년자인 상기인이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를 사용함에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의 파손 및 분실 등의 책임은 법정대리인 본인이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 사용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제공목적 :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사용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2. 제공받는자 : 용인시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미성년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4.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스튜디오 사용 목적 달성 시까지

※ 신청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허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용인시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